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8월 29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7년 8월 3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3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2007. 9. 12) 상정
- 제13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2007. 9. 12) 원안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세정과장 윤 준 의)

가. 제안이유

- 토지의 활용은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부담 급등의 문제점이 있는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경농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일정기간 감면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표준 조례안이 시달(2007. 7. 31)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경농지로 농지 소재지 또는 인접 시·구에 거주하는 농지 소유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있을 경우에는 향후 3년간 단계적으로 재산세를 감축(75% → 50% → 25%)하는 것으로 규정을 마련함.

(안 제16조의2 신설)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input type="radio"/> 특이사항 없음	<input type="radio"/> 특이사항 없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없 음

나. 반대토론

없 음

5. 심사결과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9호
의결년월일	2007. 9.14 (제138회)

제출년월일 : 2007. 8. 29.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토지의 활용은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부담 급등의 문제점이 있는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경농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일정기간 감면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조례안이 시달(2007. 7. 31)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경농지로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 시·구에 거주하는 농지 소유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있을 경우에는 향후 3년간 단계적으로 재산세를 감축(75% → 50% → 25%)하는 것으로 규정을 마련함.(안 제16조의2 신설)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용도지역이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안에 소재하는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날부터 1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그 다음 1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그 다음 1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 농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농지 소재지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안의 지역일 것
2. 농지 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일 현재 8년 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직접 경작하는 경우일 것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례) 제16조의2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③ (적용시한) 제16조의2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16조의2(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 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용도 지역이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안에 소재하는 전· 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 지”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 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 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이 해 제된 날부터 1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그 다 음 1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그 다음 1년간 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 한다.</p> <p>1. 농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농 지 소재지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안의 지역일 것</p> <p>2. 농지 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일 현재 8년 이상 그 소유 농지에서 직접 경작하는 경우 일 것</p>